

##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
[시행 2025.07.11]

(일부개정) 2025-07-11 조례 제 5408호 (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)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다문화가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
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

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

2. “결혼이민자등”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

나. 「국적법」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

3. “아동·청소년”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도지사의 책무)**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 경제·사회·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** ① 도지사는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3조의3에 따라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

2.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

3.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·사회·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

4. 다문화가족에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

5.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

6. 다문화가족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③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확정한다.

**제5조(실태조사)**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### 제2장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

**제6조(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)**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해 충청북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.

1.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
2.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

**제7조(협의회의 구성)**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다문화가족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. <개정 2025.4.4.>

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의 소속 관계관
2.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
3. 사회활동 참여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
4.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**제8조(위원의 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**제9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9조의2(협의회의 운영)**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 
[본조신설 2025.4.4.]

**제10조(간사)**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.

**제11조(운영세칙)**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# 제3장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

**제12조(지원 사업)**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
2.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운영 지원
3. 결혼이민자등의 생활정보 제공과 사회적응 및 직업 교육 지원
4. 다문화가족의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 지원
5.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 보호·지원
6.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
7.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의 보육·교육 지원
8.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
9.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·예술·체육행사 지원
10.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

**제13조(다문화가족에 이해증진)** 도지사는 충청북도민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가족해체 예방)**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등을 실시하고,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협력체계 구축)**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포상)**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, 법인, 단체 등에게 「충청북도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 <개정 2025.7.11.>

## 제4장 보칙

**제17조(단체 등에 대한 지원)**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18조(사무의 위탁)**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 중 일부를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### 부 칙(2023.12.29. 조례 제5042호)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「충청북도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에 따라 행한 사업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
### 부 칙(2025.4.4. 조례 제5271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2025.7.11.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